

대통령령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가정보원 (수사국)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案)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임무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나.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수거, 출국금지 등 요청, 재판확정기록 등 열람·복사요청 권한을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안보범죄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 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시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의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보상, 개인정보처리 등 규정(안 제7조 ~ 제13조)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안보범죄등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범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81조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비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

다.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관한 정보 중 북한에 의해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라. 북한에 의해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

2.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이란 안보범죄등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나. 대검찰청

다. 경찰청

라. 해양경찰청

마. 국군방첩사령부

바. 그 밖에 안보범죄등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안보범죄등 대응업무 범위 및 방식) ① 이 영에 따라 국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대응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범죄등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2. 제1호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대응조치

가. 안보범죄등 대응과 관련하여 인적·기술적 정보 원천의 확보와 운용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등”이라 한다)을 발견·추적하고,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등을 분석·검증하는 확인 활동

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안보위해자등에 대한 역이용, 와해, 추방 및 사법처리·행정조치 지원 등 견제·차단활동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는 테러·피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지원, 현지파견,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② 국정원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과학적

· 기술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수거 등) ① 국정원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류물을 습득하거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국정원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제1항 전단의 물건에 관하여 분석·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 안보범죄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원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 제1항 전단의 물건을 송부할 수 있다.

④ 국정원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 제1항 전단의 물건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중 북한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경우

제5조(출국금지 등 요청) ① 국정원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민(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정원은 정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재판확정기록 등 열람·복사요청) ① 국정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또는 법원에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 수사 중인 사건 및 불기소·불송치 결정 기록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각급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다.

② 국정원은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라 필요성을 소명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협의회 설치) ①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의 실·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원장이 정한다.

제8조(각급 수사기관과의 협력 등) ① 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 나목의 범죄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또는 합동수사기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으로부터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 받아서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9조(보안대책) ①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의 장은 공유된 안보범죄등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은 다른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에서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처리 결과의 통보)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은 다른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개시·종결 등 처리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활동 업무 역량 강화 등) ① 원장은 직원이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고, 준법·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 이외의 안보범죄등 대응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안보범죄등 대응 관련 업무의 직무교육을 원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 등) ① 국정원은 국민의 신고의식 함양을 통한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고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정원은 대응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보, 신고 및 협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적정한 보상 및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한 보상 및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기여도·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① 국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라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정원은 대응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한다.

사건기록 열람 · 복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문서번호 : 제 호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법원장/경찰서장)

요 청 일 : 2023. . . 발 신 국 가 정 보 원 장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 및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6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보유중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를 합니다.

요청항목	[] 사건기록 열람		[] 사건기록 복사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건	사건번호			
	죄 명			
	기록 종별	경찰 수사 중(검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청 사건 포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수사중지), 기타 경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검찰 수사 중(이의신청 사건 포함),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공소보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기 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형사재판 확정 기록, 기타 검찰에서 보관 중인 기록(), 법원 보유 재판기록(재판 중 / 재판 확정 / 기타 :)		
요 청 사 유 (중복기재 가능)	☐ 현재 안보범죄등 활동 징후가 있어 과거 사건과 동일성·유사성 등 확인			
	요청 대상 사건은 (국정원법 제4조 제1항제1호다목, 라목에 규정된 범죄 사건 / 기타 사건)이고, 요청 대상 사건의 (피의자 / 피고인 / 피해자 / 참고인 / 기타 관련자)에 관하여			
요 청 부 분 ※	☐ 현재 안보범죄등 활동 징후가 있어 과거 사건과 연계성 확인			
	☐ 현재 확인된 반국가단체 등 연계 활동의 성격·고의 등 확인 ☐ 기타 국가안보·국익 침해 활동 확인 (사유 :) ☐ 기밀사항으로 대면설명			

※ 별지사용 가능

210mm×297mm[백상지(80 g/m²)]